8 (제224회 - 제1차 부록)

성주군청 및 읍·면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

제출일자 : 2017년 월 일
제 출 자 : 성 주 군 수

1. 개정이유

○ 읍 · 면사무소의 명칭·위치 및 관할구역을 조례로 명시하고 행정 자치부의 “16년도 복지허브화” 관련 읍·면사무소 명칭변경지침을 반영하여 초전면사무소의 명칭을 초전면 행정복지센터로 규정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○ 복지허브화 관련 면사무소 명칭변경(안 별표)

- 초전면사무소 ⇒ 초전면 행정복지센터

3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 :「지방자치법」제6조, 「성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」제14조

○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○ 성별영향평가분석 : 제외대상 (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」제2조제2항제3호)

○ 규제심사 : 해당없음[기획감사실-3702(2017.04.18.)]

○ 입법예고 : 제외대상

성주군 조례 제 호

성주군청 및 읍·면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성주군청 및 읍·면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별표 중 사무소명칭의 “초전면사무소”를 “초전면 행정복지센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<table>
<tr><th>현 행</th><th>개 정 안</th></tr>
<tr><td>[별표]
읍·면사무소 소재지(제2조관련)

<table><tr><th>사무소명칭</th><th>소재지</th><th>비고
(관할구역)</th></tr><tr><td>(생 략)</td><td></td><td></td></tr><tr><td><u>초전면사무소</u></td><td>성 주 군
초전면 대장길
107</td><td>초전면 전역</td></tr><tr><td>(생 략)</td><td></td><td></td></tr></table></td><td>[별표]
읍·면사무소 소재지(제2조관련)

<table><tr><th>사무소명칭</th><th>소재지</th><th>비고
(관할구역)</th></tr><tr><td>(현행과 같음)</td><td></td><td></td></tr><tr><td><u>초전면
행정복지센터</u></td><td>성 주 군
초전면 대장길
107</td><td>초전면 전역</td></tr><tr><td>(현행과 같음)</td><td></td><td></td></tr></table></td></tr>
</table>